

검 토 보 고 서

충청북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서완석

충청북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의자 : 오영탁 의원 등 6인

2. 발의 및 회부일자

가. 발의일자 : 2020년 4월 13일

나. 회부일자 : 2020년 4월 16일

3. 제안이유

충청북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함(안 제2조)

다. 교통안전 시책 수립·시행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교육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마. 교통안전 선진화 구현을 위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바. 운전면허를 가진 반납한 고령운전자 교통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5. 검토내용

가. 조례제정의 필요성

- 충청북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됨.

나.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

- 「교통안전법」 제3조는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 수립의무와 각종 계획 및 정책 수립 시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배려해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교통시설의 정비, 보행자와 자전거이용자가 보호되도록 배려해야 하며, 교통안전 지식 보급과 의식 제고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련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의 제정은 적법함.
- 조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
 - 안 제3조는 교통안전 시책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
 - 안 제4조는 교통안전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5조는 교통안전 선진화 구현을 위한 보조금 지원 사항을 규정함.
 - 안 제6조는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에 대한 교통비 지원 사항을

규정함.

- 기타 조문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
- 입법예고('20. 4. 6.~'20. 4. 12.)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였음.

다.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

-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간에 상충되는 내용은 없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

6. 검토의견

- 「충청북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충청북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안 제6조에 따른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비는 도내 시군별 연령 기준이 상이함에 따라 시군과의 협의를 통해 보조금 지원 기준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음.